

光州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

審查報告書

1994年 7月
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4年 5月 25日
- 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4年 5月 26日
- 라. 上程日字 : 1994年 6月 21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4年 6月 21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課長 曹秉峻)

가. 提案事由

- 公務員의 사적 國外여행을 자율화하고, 재외公務員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公務員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主要骨子

-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 (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)
-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 제3항)
-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(안 제22조 제4호)
- 형제자매 결혼시,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(안 별표3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要旨

(專門委員 : 趙澤龍)

-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이 재외 파견근무시 재외 공관장에게 복무 감독을 위탁하여 공무원의 국위선양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며
- 공무원의 연가회수 제한을 해제하여 해외여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해외여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제 폐지와 승진시험 응시시 공가를 허가하고

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특별휴가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환책으로 본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므로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檢討要旨 : 없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음

7. 少數意見要旨 : 없음